



[2016.3.9.] [545 , 2016.3.9.,]

() 044 - 215 - 4154

1

1 () 「 」 (" ") 6

1 . < 2005.3.19.>

[1997.4.10.]

1 2() 7 2 1

1 2

[2003.1.24.]

2 () 「 」 (" ") 7 1 2

4

[2012.2.28.]

2

1 <2012.2.28.>

3 <2012.2.28.>

4 <2012.2.28.>

2

5 () 8 9 .

[2013.2.23.]

6 () 9 1 10 . ,
10 2 . < 1992.12.31., 1995.2.20., 2005.3.19., 2008.4.29.,
2012.2.28.>

7 () 11 가 11 2 .
, 11 가 11 2 .
< 1999.3.23., 2012.2.28.>

8 () 9 2 10 .
< 2012.2.28.>

8 2(가) 18 2 " " 「 가가
」 48 3 가가 . < 2013.6.28.>
[2012.2.28.]

9 (2)	12	12	. <
2006.2.9.>			
10 ()	13 1	12	
11 ()	14 2	13	
3			
12 ()	23	14	. <
2015.2.23.>			
13 ()	24		15
[2012.2.28.]			
14 ()	20 2	16	
. < 2012.2.28.>			
4			
15 ()	23 1	17	. < 1983.12.31., 1988.1.13., 2012.2.28.>
16 (2)	23 2	18	. <
2012.2.28.>			
16 2()	27 1	18 2	.
[2012.2.28.]			
16 3()	27 2	18 3	
[2012.2.28.]			
16 4()	23 2 1 3		18
4			
[2012.2.28.]			
16 5(" ")	27 3	1 2	(

징수금액	수수료율
1백만원 이하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5억원 초과	1,332만원

[[2012.2.28.](#)]

16 6() 27 3 2
18 5 .

[[2012.2.28.](#)]

16 7() 27 4 18 6

[[2012.2.28.](#)]

3

1

16 8() 24 4 18 7

[[2012.2.28.](#)]

17 () 29 1 2 .
19 .

[[1997.4.10.](#)]

18 () 25 22 . < [2012.2.28.](#) >

19 () 26 5 23 . < [2012.2.28.](#) >

20 () 29 24 . < [2012.2.28.](#) >

21 () 34 1 25 .
< [2012.2.28.](#) >

22 (가) 39 가 (가) .
26 (), 26 () 가 (가)

22 2 <2012.2.28.>

2

23 () 41 27 .

24 (. 가) 42 (54)
. 가 28 . 가 .

3

25 () 41 1 29 ()

. < 2012.2.28.>

41 3 29 () . <

2012.2.28.>

4

26 () 46 1 . < 2012.2.28.>
30 46 2 31

. < 2012.2.28.>

27 () 47 . . (. .)
. 32 . . 33

28 () 48 1 34

29 () 45 4 , 46 3 , 48 1 51 1

35

[2012.2.28.]

30 () 50 . () . < 1994.3.5.>
36 . .

31 () 46 2 37

() . < 1994.3.5., 2012.2.28.>

5

32 () 56 2
38 () .

- 33 () 39 57 1 () .
- 6
- 34 () 58 40 .
- 35 () 54 1 41 .
[< 2012.2.28.>](#)
- 36 () 60 42
 () .
- 7
- 37 () 56 43 . [< 2012.2.28.>](#)
- 38 (가) 57 1 가 44 () . [< 2012.2.28.>](#)
 57 2 가 44 () 가 . [< 2012.2.28.>](#)
- 39 () 58 2 45
 . [< 2012.2.28.>](#)
 64 가 46 . [< 2012.2.28.>](#)
- 39 2(가) 58 4 가 46
 2 가
 58 6 가 46 3 가
- [[2012.2.28.](#)]
- 40 (가) 65 4 가 47 가
- 41 () 60 2 48
 . [< 2012.2.28.>](#)
- 8
- 41 2() 68 2 1 48 2 .
 [[2012.2.28.](#)]
- 41 3() 68 2 2 48 3 .
 [[2012.2.28.](#)]

41 4() 68 3 2 . 48 4 .
 [2012.2.28.]

41 5() 68 5 (")
 ") , 12 12 . <
 2014.3.14.>

1. 「 」
 (" ")가 71 1
 3 가 가 78 1 1 가
 (" "):

2. 가
 가 (1 가 가 71 2
 가) (" "):
 (가)

3. 가 (" "):

4. 78 1 2
 (" "):
 68 5 1

2 가 , 65 1
 가 ,
 .< 2014.3.14.>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	최저수수료
완납수수료	공매광고 전	0.6%	12만원
	공매광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해제수수료	공매광고 전	0.6%	12만원
	공매광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수수료	-	3.0%	30만원
매각결정취소수수료	-	1.2%	24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공매광고"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금납부"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

2 가 10 1 1
가 1 2 가

.< 2014.3.14.>
2 , 가
.< 2006.2.9., 2008.4.29., 2014.3.14.>

[1984.9.18.]
[45 6 <2012.2.28.>]

41 6() 가 68 1
1 5 62 1

69 2 .
69 2 48 5 .
41 5 62 2 가 .
69 3 68 2 .
48 2 48 3 .

[2012.2.28.]

41 7() 62 2 1 48 6
.

[2012.2.28.]

42 (가) 63 1 가 49
가 .

43 () 70 1 가
50 .
70 2 . ,

[2012.2.28.]

44 () 71 1 51 .

44 2() 67 2 1
51 2 () .
1 .
(附記登記) . , 「

」 31 3 .
[2012.2.28.]

45 () 68 52 .

45 2() 68 2 1 2 4
52 2 .
68 2 4 6 52 3 .

[[2012.2.28.](#)]

45 3() 68 3 1 52 4 .

[[2012.2.28.](#)]

45 4() 71 2
52 5 () () .

[[2012.2.28.](#)]

45 5(가) 74 2 가 52 6 . <

[2012.2.28.>](#)

[[1983.12.31.](#)]

45 6
[45 6 41 5 <[2012.2.28.>](#)]

45 7 <[2012.2.28.>](#)

46 () 73 1 53 .

47 () 73 2 54 .

48 () 75 3 55 .
75 2 1 55 2

[[2012.2.28.](#)]

49 () 76 56 .

50 () 78 1 57 .
< [2012.2.28.>](#)

51 () 77 58 .
, 59 < [2009.4.23.>](#)

52 () 78 1 60 .
()

52 2() 80 2 2 60 2 .

[[2012.2.28.](#)]

53 () 83 1 61 .
83 3 가 61 2
83 2 61 3

[2012.2.28.]

54 () 84 2 62

[2012.2.28.]

55 () 61 5 , 62 2 , 79 80 1 가
48 5 62

[2012.2.28.]

56 () 82 2 3 14

82 2 3 15

()

85 2 5 16

[2015.2.23.]

< 1088 ,1975.3.6.>

() 2680

() 1975 3 10

()

< 1282 ,1977.8.25.>

가가

< 1423 ,1980.2.15.>

< 1461 ,1980.11.26.>

1980 12 1

< 1595 ,1983.12.31.>

1984 1 1

< 1626 ,1984.9.18.>

()

()

< 1635 ,1984.11.29.>

()

() 1984 12 31 ()

< 1743 ,1988.1.13.>

()

() 8 , 10 , 11 17

() 1988 3 31

< 1853 ,1991.3.14.>

()

() 45 6

() 2

• • 8 10

< 1899 ,1992.12.31.>

() 1993 1 1

() 10 1993 3 31 10

10 - 1

< 1964 ,1994.3.5.>

< 1985 ,1994.7.1.>

1994 7 1

< 489 ,1995.2.20.>

() . , [10] • [11] • [17]
 [18] 1995 3 1 .
 () [1] [3] , [14] • [63]
 [69] , [8]
 , [10] • [11] • [17] [18]
] . , [30] [34] , [36] • [38] • [39] • [42] • [43]
 [58] . .

< 625 ,1997.4.10.>

() .
 () 45 6

< 72 ,1999.3.23.>

() .
 () 45 6

< 191 ,2001.3.31.>

() .
 () .

< 297 ,2003.1.24.>

() .
 () .

< 361 ,2004.3.11.>

< 427 ,2005.3.19.>

.

< 485 ,2006.2.9.>

()

.

() 45 6 1 1

.

() 10 • 12 • 17 18

• • .

< 512 ,2006.7.5.>

.

< 579 ,2007.10.29.>

.

< 18 ,2008.4.29.>

.

< 76 ,2009.4.23.>

1 ()

.

2 () 45 6

.

< 105 ,2009.10.13.>

.

< 145 ,2010.4.8.>

.

< 192 ,2011.3.24.>

1 ()

2 ()

< 263 ,2012.2.28.>

1 ()

. , 16 2 16 7 2013 1

1

2 ()

< 304 ,2012.12.14.>

1 ()

2013 1 1

2 ()

< 321 ,2013.2.23.>

< 355 ,2013.6.28.>

1 ()

2013 7 1

2 9

10 ()

8 2 " 「 가가 」 18 2 " 「 가가 」 48 3 " .

11

< 405 ,2014.3.14.>

1 ()

2 () 41 5

< 462 ,2015.2.23.>

1 ()

2015 2 23

2 (가)

가

< 545 ,2016.3.9.>

[별표] <개정 2015.2.23.>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제43조제2항 관련)

건당 감정평가금액	기준수수료
5천만원 이하	20만원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20만원+(5천 만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9만 5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9)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4만 5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8)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434만 5천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7)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84만 5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6)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184만 5천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5)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5,684만 5천원+(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4)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1억 3,684만 5천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3)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 2,684만 5천원+(6,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2)
1조원 초과	3억 684만 5천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1)

비고: 세무서장은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된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2.23>

발급번호	납세증명서			처리기간		
				즉시(단, 해외이주용 10일)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본점)					
증명서 의 사용 목적	<input type="checkbox"/> 대금수령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주번호 제 호 ○이주확인일 년 월 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단위 : 원)						
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1. 증명서 유효기간 : 년 월 일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 <input type="checkbox"/>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input type="checkbox"/> 기타 ()						
담당부서						
담당자	년 월 일					
연락처	세무서장 ㉠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1.3.24>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 []주택임차 []상가임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대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임차 건물 소재지(건물의 종류·명칭 및 동·열·층·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징수법」 제 6 조의2에 따라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국세징수법」 제 6 조의2에 따라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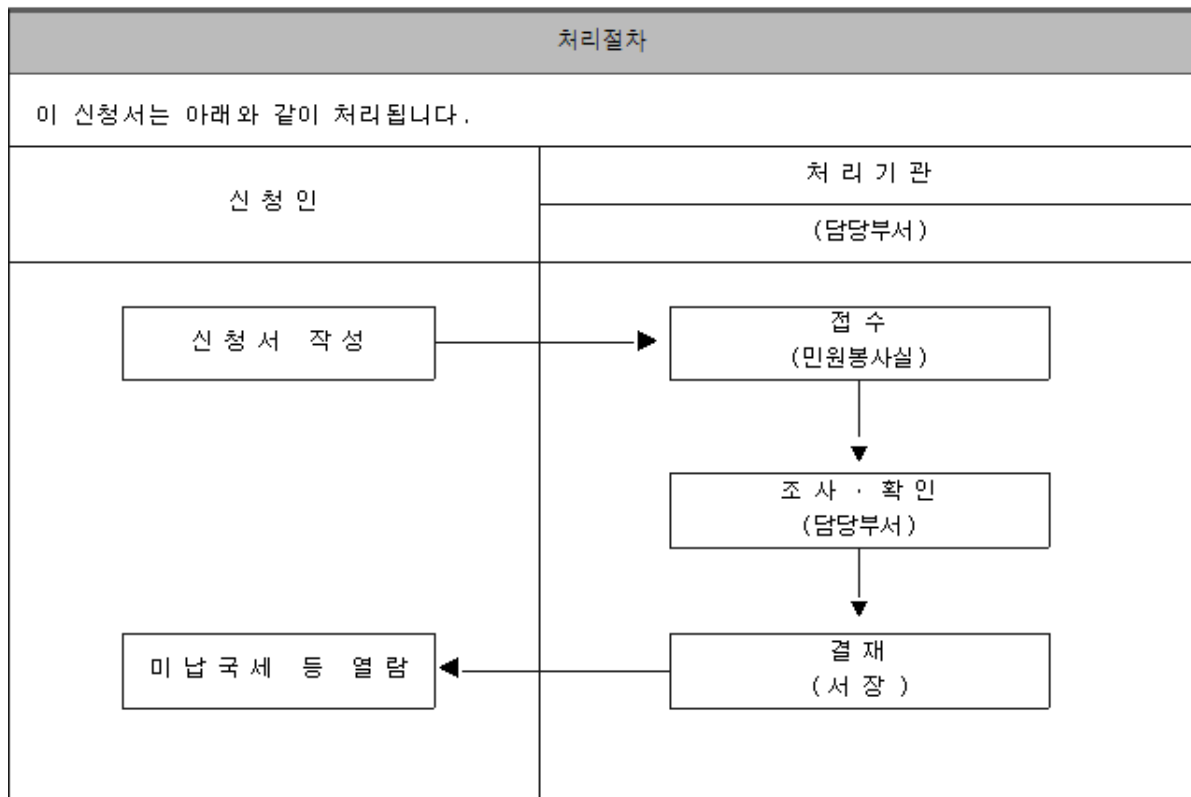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위 신청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결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997.4.1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7.4.10>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3.9.>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아래 사람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종 목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기타 필요한 사항 :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12.2.28>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2.2.28>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12.2.28>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12.2.28>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 2. 23.>

(앞쪽)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연도/기분	년 기 분												
	납부금액												
세목명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영수증 지점 (수납인)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연도/기분	년 기 분												
	납부금액												
세목명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영수증 지점 (수납인)

영수필 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 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 세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회계 연도		

연도/기분	년 기 분												
	납부금액												
세목명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영수증 지점 (수납인)

210mm×297mm (전산용지(특급) 90g/㎡)

(뒤쪽)

안 내 말 씀

1. 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납부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코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맞춤형납부서 다운로드가능).
2. 납부하려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십시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 납부연월 : [사례 2013.01 → 1301]
 -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진납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 2 [수시분 자진납부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것]
 -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 4 [원천분 자진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소득·법인)세 원천분]
 - 세 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개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에너지환경세(59) 농어촌특별(55)
 - 수입징수관서 : 관할 세무서명과 서코드 3자리, 세무서 계좌번호
 - 성명(상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는 성명, 그 외에는 상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 외에는 사업장 주소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2.23.>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납세고지서 재증

(2쪽)

세액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는 ()에 귀속되는 ()로서 ()에 대한 것입니다.			
구분	()세	()세	
①			
②			
③			
④여기에 가산세			원을 더함
⑤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 가납부세액)			원을 빼면
⑥고지세액은			원 입니다.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산출근거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3쪽)

납세고지서 검 영수증 (납세자용)

100만원()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과세기간		일반 회계	기회 자정부 스관	조 세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계					
납기경과 1월 이내	가산금				
	계①				
납기경과	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 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수납인
세무서장 (인)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과세기간		일반 회계	기회 자정부 스관	조 세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납기경과 1월 이내	가산금				
	계①				
납기경과	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우체국

210mm×297mm(OP지 90g/㎡)

(4쪽)

안 내 말 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계속)

(6쪽)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특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① 세특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세특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6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르(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5.2.23.>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납세고지서 재증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주액	종합합산표지	별도합산표지
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채산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결정세액	①	②	③

구분	종합부동산세 (①+②+③)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 합계		과세표준
가산세액		세율
기납부세액		산출세액
차감고지세액		가산세액
고지에 대한 안내 말씀		기납부세액
		차감고지세액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_____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계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과세기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서관 조세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액				
납기경과	가산금			
1개월 이내	계①			
납기경과	가산금②			
	계(①+②)			

100만원()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과세기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서관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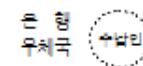
납부기한	년	월	일	까지
금액				
납기경과	가산금			
1개월 이내	계①			
납기경과	가산금②			
	계①+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십시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_____ 년 월 일 _____ 우체국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년 월 일



_____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210mm×297mm(CP지 90g/㎡)

(4쪽)

안 내 말 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관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계속)

(6쪽)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특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특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특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① 세특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한도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세특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6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르(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 <개정 2015.2.23.>

영 수 증 서									
전자납부번호			년	도	일반 회 계		기 획 재 정 부 소	관	조 세
성 명 (상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사 업 장)									
세 목 명									
납 부 기 한		수납구분							
		내 국 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 산 금							
		계							원
영 수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취급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100g/㎡)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08.4.29>

(제1면)

영수증서 (납세자용)							
고지서 발행번호	년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원부책호	번호	
①성명(상호)				⑧내국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농어촌특별세 (교육세)			
③주소(사업장)				⑩가산금			
④세목		⑤세목 코드		⑪체납처분비			
⑥납부기한		⑦수납 구분		⑫계			

영수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⑭
		취급자	직급	성명	⑮

22226-80011일

190mm×95mm

99. 2. 23 승인

(카본용지 42g/m²)

(제2면)

영수원부 (세무서용)							
고지서 발행번호	년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원부책호	번호	
①성명(상호)				⑧내국세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⑨농어촌특별세 (교육세)			
③주소(사업장)				⑩가산금			
④세목		⑤세목 코드		⑪체납처분비			
⑥납부기한		⑦수납 구분		⑫계			

영수	TIS 입력 담당자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⑭
	⑯		취급자	직급	성명	⑮

22226-80011일

190mm×95mm

99.2.23 승인

(카본용지 42g/m²)

(제3면)

영수필보고서 (세무서용)

고 지 서 발행번호		년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 세	원부책호	번호	
---------------	--	----	------	---------	-----	------	----	--

①성 명 (상 호)				⑧내 국 세				
②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⑨농 어 촌 특 별 세 (교 육 세)				
③주 소 (사 업 장)				⑩가 산 금				
④세 목		⑤세 목 코 드		⑪체 납 처 분 비				
⑥납 부 기 한		⑦수 납 구 분		⑫계				

TIS 확인 담당자	세무서	주임수입공무원	직급	성명	⑭
⑮	세입징수관	귀하	직급	성명	⑮

22226-80011일

99.2.23 승인

190mm×95mm

(인쇄용지 6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2.23.>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2쪽)

납부통지서

가산세 산출근거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 조에 따라 다음 납세자의 제2차납세의 무자(양도담보권자)입니다.

납 세 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구 분			
①			
②			
③			
④여기에 가산세			
⑤각종 공제세액 (보장공제, 기납부세액)			
⑥납기내 고지세액은			

()에 귀속되는 ()로서 ()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고지된 위 국세 중 ()원이 체납되어()원을 더한 금액에 ()를 적용한 ()원이 귀하께서 납부하실 금액입니다.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			

(3쪽)

납세통지서 검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과세기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서관	조 세
주소(사업장)					
납부기한		년 월 일			
계					
. . .까지	금액				
. . .	금액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과세기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서관	조 세
납부기한		년 월 일			
. . .까지	금액				
. . .	금액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년 월 일
우체국
수납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우체국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4쪽)

안 내 말 씀

1. 납부용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안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용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루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루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루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과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서 계속)

(6쪽)

6.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게 되며, 납부최고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 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용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루서에 가서서 납부용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6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쪽)

◆ 전자납부 이용방법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르(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2:0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등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납부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365일 가능, 수수료(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1.3.31>

○○세무서

우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 세 자	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소또는거소			

납기전에 징수할 국세의 내용

세 목	연 도	기 분	계	내 국 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당초납부기한

납 부 기 한
변 경 사 유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 호

변경납부기한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변경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210mm×297mm
(백상지 100g/m²)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2.23.>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 · 체납액의 내용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국세		
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특측기한)	국세	가산금	계	국세	가산금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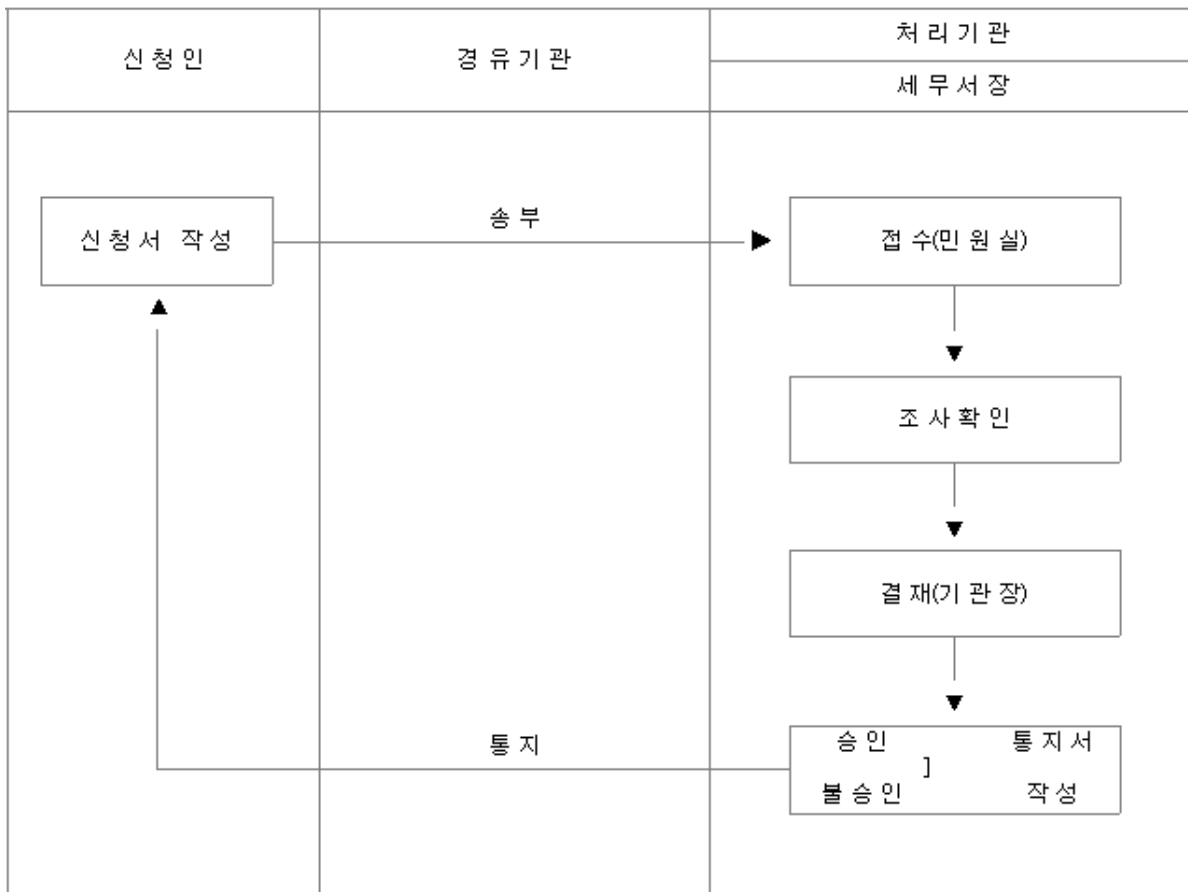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담보제공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서식] <개정 2012.2.28>

행정 기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수유예 (승인 여부) 통지
 체납처분유예

귀하(귀사)의 [()국세·체납액의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제15조제3항·제4항, 제17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인 적 사 항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신 청 일		승 인 여 부				
유 예 승 인(기각) 사유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 목 코 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 납 금 액 및 횟 수					(단위: 원)	
횟 수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계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취소 통지

년 월 일 귀하(귀사)에게 승인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0조 및 제85조의2제5항).

납 세 자	성 명 호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는 국세·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계	교육세	가 산 금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소일자	년 월 일				
취소이유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저출용종)]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2.23.>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2쪽)

독촉장

오른쪽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㉞

독촉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㉞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납세자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계①
년 월 일까지	가산금 ②
	금액 계(①+②)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우체국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조세
	과세기간						과세기간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년 월 일까지	금액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까지	금액
년 월 일까지	금액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우체국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우체국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서식] <개정 2015.2.23.>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2쪽)

납부최고서

귀하는 다음 납세자의 _____로서 오른쪽 「영수증(납세지용)」에 적힌 금액을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㉞

납부최고기한		년	월	일	까지
제출납세자 (납세번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납세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1. 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자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㉞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납세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서관	조 세
	과세기간				
주소(사업장)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 까지	금액	계①
년 월 일 까지	가산금	②
	금액	계(①+②)

귀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국
우체국 (수납인)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서관	조 세
	과세기간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 까지	금액
년 월 일 까지	금액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성명(상호)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서관	조 세
	과세기간				

납 부 할 금 액	
년 월 일 까지	금액
년 월 일 까지	금액

귀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우체국 (수납인)

년 월 일
국
우체국 (수납인)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의뢰

아래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액 납부 촉구 등의 업무를 위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체납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위탁사유	[]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호)			
	[]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신명의

직인

이 의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의3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통지

귀하의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를 위탁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불임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체납자	성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불임: 납세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호서식),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의 4서식] <신설 2012.2.28>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액 납부 촉구**

○○ 세무서장으로부터 귀하의 아래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붙임의 납세고지서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

체납자	성 명 호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 ·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붙임: 납세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 <신설 2012.2.28>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수신자
(경유)

제 목 징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재산 통보

우리 공사가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탁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소득 및 재산이 발견되어 통보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호).

체납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조사일자				
발견 소득				
발견 재산	품명			
	면적(수량)			
	소재지			
	보유형태			
	소유자(점유자)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전화()	전송()	홈페이지 주소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 통지

귀하(귀사)가 납부할 국세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

납세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조서작성일자		년 월 일		
압류사유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일자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가 확정하지 아니한 때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1997.4.10>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참 조 총무과장 제 목 체납처분인계(인수·인수거절)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체납액의 체납처분을 인계(인수·인수거절)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전 주소 또는 거소			
	현 주소 또는 거소			
재 산 의 표 시				
인계(인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 목 코 드	관 리 번 호	연 도 기 분	내 국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세 목 명	납 부 기 한	계	교 육 (방 위) 세	가 산 금
※ 참고사항				

22226-11711일

210mm×297mm

97.2.27 승인

(백상지 100g/m²)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1997.4.10>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1997.4.10>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0.3.27>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_____

소속 _____

지위 _____

지급 _____ 성명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2.5cm
사
진

3cm

위의 사람은 국세징수법에 관한 이법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세무서장 인

2006-01-88C
75.2.13 승인

95mm×80mm
(백상지 120g/m²)

(후면)

자 격 증 명 사 항

1.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
2. 국세징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색
3. 국세징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1997.4.10>

압류 조 서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사업장)				
압 류 연 월 일		압 류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 산 금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2226-12911일
97.2.27 승인

210mm×297mm
(백상지 100g/m²)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질물(質物)의 인도 요구

귀하(귀사)가 질권(質權)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34조제1항).

질권자 (채권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채납자 (질권설정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인도할 재산의 표시				
인도 요구 사유				
인도일자		년 월 일		
인도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인도일자까지 질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즉시 해당 질물을 압류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갑)] <개정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체납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압류일(압류해제일)		년 월 일		
압류재산의 표시				
가압류(가처분)당 사의 소유자	성명(상호)			
	주소(사업장)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신청인)	성명(상호)			
	주소(사업장)			
가압류(가처분) 결정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자활용품)]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을)] <개정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체납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압류일(압류해제일)		년 월 일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1992.12.3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성명	
년 월 일 압류	세무서장 ①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2226-13211일

190mm×70mm

92.12.28 승인

한지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갑)] <개정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압류 통지(갑)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납자의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을 년 월 일까지 우리 세무서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채 무 자	성 명 호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채 권 자 (채 납 자)	성 명 호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채권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저활용종)]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 <개정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압류 통지(을)**

귀하(귀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_____에 대한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

채 권 자 (체 납 자)	성 명 호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채 무 자	성 명 호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채권의 표시				
압 류 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 ·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_____)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자출용종)]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7.10.29>

문 서 번 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등 기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 기 권 리 자		국(처분청: 세무서장)			
등 기 의 무 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름)			
지방법원 귀중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촉탁공무원 세무서장 <input type="checkbox"/></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p>			
첨 부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도 면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압류조서 통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접 수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1997.4.10 >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			
선박의 표시					
선적항					
선박소유자성명또는명칭					
등기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	
등기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기 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input type="checkbox"/>	
		성명			
부속서류		압류조서 통			
접수	년	월	일	접수	조사
	제		호	기입	대조확인
※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 질 3. 갑판의 총수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22226-13711일

210mm×297mm

97.2.27 승인

(백상지 100g/m²)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7.10.29>

문 서 번 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공 장 재 단, 광 업 재 단)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체납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분의)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첨 부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도면(건물) 2.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3. 압류조서등본 통 4. 촉탁서 부분 통			토지대장 등본(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건물) 1부	
접수	년 월 일	접 수			
	제 호	기 입	조 사 대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7.10.29>

문 서 번 호		보존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보존			
등 기 의 목 적		보존등기			
등 기 명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금	년 월 일	국세체납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분의)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 속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압류조서등본 통	2. 촉탁서 부분 통	토지대장 등본 1부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210mm×297mm(백상지100g/m²)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압류 통지

채납자가 채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

받는 사람	성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채 납 자	성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1997.4.10 >

문 서 번 호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사 용 의 본 거 지					
재산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					
등 록 원 인 과 연 원 일		년		월 일 압류	
등 록 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등 록 권 리 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 록 의 무 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록 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관할관서) 귀중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p>			
부 속 서 류		압류조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22226-14211일

97.2.27 승인

210mm×297mm

(백상지 100g/m²)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1997.4.10>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는 거 소			
인도하여야할재산의표시				
인 도 기 일	년	월	일 까지	
인 도 장 소				
인 도 를 명 하 는 이 유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p>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세무서장 ㉠</p>				

22226-14311일

97.2.27 승인

210mm×297mm

(백상지 100g/m²)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1997.4.10>

문 서 번 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 체 재 산 권 의 표 시					
무체재산 권 리 자	성 명				
	주 소				
등기(등록)의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 기(등록)의 목 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 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input type="checkbox"/>	
		성명			
부 속 서 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 조 확 인	

22226-14411일
97.2.27 승인

210mm×297mm
(백상지 100g/m²)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1997.4.10>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 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수	년 월 일	접수		조사	
	제 호	기입		대조확인	

22226-14511일

210mm×297mm

97.2.27 승인

(백상지 100g/m²)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해제 통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_____로 인하여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4조제 1항).

받는 사람	성 명 호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체 납 자	성 명 호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 · 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_____)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전화()	전송()	/ 홈페이지 주소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1997.4.10>

문 서 번 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 기(등 록)의 목 적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 권 리 자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등 기(등 록) 의 무 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등 록 세		무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 성명			
부 속 서 류		압류해제조서 통 촉탁서 부분 통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22226-14811일

97.2.27 승인

210mm×297mm

(백상지 100g/m²)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5.3.19>

교 부 청 구 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 납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교부청구금액		금		원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법정기일	연도·기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비 고
세 목 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 산 금	
배 당 액 입 금 의 회 계 좌	개설은행			예·적금명칭		
	계좌번호					
	사용인감			예금명의인		
1.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2. 「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div style="float: right; margin-right: 50px;">세무서장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귀하 </div>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인 경우는 비교란에 "당해 세금"이라고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갑)] <개정 2001.3.31>

○○세무서

우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참가압류통지서(갑)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재산의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 목 코 드	관 리 번 호	연 도·기 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명	납 부 기 한	계	교육(방위)세	가 산 금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류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100g/m²)

[별지 제44호서식(을)] <개정 2001.3.31>

○○세무서

우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참가압류통지서(을)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참가압류연월일	년 월 일	참가압류기관	
---------	-------	--------	--

참가압류재산의표시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가압류하였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210mm×297mm
 (백상지 100g/m²)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

우리 서가 압류하고 있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인도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

체납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인도장소				
인도일자		년 월 일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 붙임 : 1. 압류재산 보관증(제3자 보관)
2. 압류재산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제3자 보관),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택상지 80g/㎡ 또는 증집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46호의 2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조속히 매각처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처분 최고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을 알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8조제4항).

체 납 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매각최고일자		년 월 일		
압류일자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3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

귀 서에서 압류한 재산을 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않아 우리 서에서 매각할 것임을 알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8조제6항).

체 납 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매각최고일자		년 월 일		
압류일자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0.3.27 >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체 납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거소	(통 반)		
인 수 재 산	④종 류			
	⑤수 량			
	⑥품 질			
⑦인 수 연 월 일		년	월	일
⑧인 수 장 소				
<p>위와 같이 인수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 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세무서장 <input type="checkbox"/></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2206-01-94A

75.2.1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3제1항).

체납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5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의계약 통지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_____의 사유로 수의계약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체납자	성 명 호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예정가격				
수의계약 일자 년 월 일				
수의계약 장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 국 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다만, 수의계약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을 중지합니다.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_____)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6서식] <신설 2012.2.28>

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서

체 납 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처분청	
현황조사 내용	공매대상 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및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조사 내용

「국세징수법」 제 62조의2제 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위와 같이 해당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1999.3.23 >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체 납 자	①성 명		②주민 등 록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주소또는거소	(통 반)			
⑤번 호	⑥공매재산의표시	⑦매각예정가격	⑧산 출 근 거		
※ 산출근거란에 평가상 참고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것					

2206-01-96A

75.2.1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0.3.27 >

감 정 서			
감 정 인	①성명 또는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또는 거소		
	④상호 또는 명칭		
	⑤자 격		
⑥감 정 의 퇴 인			
⑦감 정 재 산 의 표 시			
⑧감정가격의산출근거			
⑨감 정 연 월 일		년	월 일
⑩감 정 가 격		금	원정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감정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감정인 인</p> <p style="margin-top: 20px;">세무서장 귀하</p>			

2206-01-97A

75.2.1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0.3.27 >

질 권 설 정 서

수입인지

㉠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65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 재산 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하는 바 본인(또는 입찰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도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질권설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세무서장 귀하

2206-01-98A

75.2.1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공매공고된 아래의 압류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7조의2제1항).

체 납 자	성 명 호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압류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목적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압류등기(등록)일자		년 월 일(접수번호 :)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등 록 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 신 명 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일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전화()	전송()	/ 홈페이지 주소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통지**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8조).

체납자	성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일자		년 월 일			
공매 장소		공매 방법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배분요구의 종기일자					
회 차	입찰일시(기간)			매각결정 기일	매각예정가격
	입찰기간(입찰일)		개찰일자		
수의계약		제1회 공매 후 1년 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	1.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합니다(「국세징수법」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				
	2.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국세징수법」 제68조의2제3항).				
3.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68조의2제5항).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 목 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발 신 명 의 직인

1.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합니다.
2.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의 배분요구 안내,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택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요구의 종기			배분기일	
채권 현황	채권의 종류				
	실채권액	총계	원	원금	원
		이자	원	기타	원
	임대차 현황	용도			전입일(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			점유일자		
임차보증금			비고(월세 등)		
배분금 수령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사본 첨부)		
배분기일 통지 송달장소	송달구분	송달지	송달장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에 따른 채권자로서 위와 같이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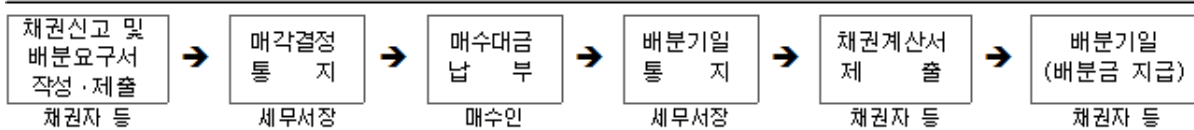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주소

전화번호

세무서장 귀하

처 리 절 차



210mm×297mm[택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권리자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보채권자	설정계약서, 채권원인서류 사본	
임대차관계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있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관계 (상가)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관할세무서장의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 등의 현황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금채권자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우선변제 임금채권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2.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 마. 위 4가지 서류중 하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 사본	
일반채권자	1. 가압류신청서 및 결정문 사본(가압류채권자인 경우만 해당) 2. 소장사본 및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사본(집행권원에 집행문 부여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의 제출기한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입니다.
2. 채권의 종류는 근저당, 임금채권, 일반채권 등으로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3. 임대차 현황의 용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4.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인수부담이 바뀌게 되는 권리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분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공매공고 등기전에 등기(등록)되지 않은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배분요구 하는 경우 배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신고된 송달장소로 배분기일을 통지하므로 송달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송달장소를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인 경우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	------	--------

○○세무서장

직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

아래 체납자의 공매재산에 대해 귀하께서는 배분요구의 종기인 년 월 일까지 채권을 신고하거나 배분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제4항 및 제6항).

체 납 자	성 명 호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처분청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일자		년 월 일		
배분요구 종기		년 월 일		

끝.

발신명의



이 안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4서식] <신설 2012.2.28>

공매재산명세서

공매재산	처분청	공매 공고일
	입찰기간	개찰일자
	매각결정기일	배분요구의 종기일자
	공매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조사내용	1. 공매재산의 표시(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등)				
	2. 공매재산의 점유관계(점유자, 점유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번호	권리관계	성명	배분요구일	배분요구 채권액
	※ 배분요구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채권액 변동액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6. 그 밖의 사항					

「국세징수법」 제 68조의3제 1항에 따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재산명세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택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5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아래의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1조의2).

체 납 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일자과 원인		년 월 일 [] 공매취소 공고 [] 공매중지 [] 매각결정 취소		
등기의 목적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말소할 등기(등록)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 (접수번호 :)		
압류등기(등록)일자		년 월 일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등 록 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끝.

발 신 명 의

직인

접 수	년 월 일	접 수		조 사	
	제 호	기 입		대조확인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2호의6서식] <개정 2012.2.28>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참 조			
제 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참 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비 고
(발신기관장) 인			

2207-497일
 83.12.22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00.3.27 >

입찰서			
관 리 번 호		공 매 회 차	년 도 회
입찰 가격 (최저매매가격 이상)	금 원(₩)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100 이상)	금 원(₩)		
<p>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년 월 일</p> <p>입찰자 성 명 ① (전화번호 :)</p> <p style="margin-left: 40px;">주민등록번호</p> <p style="margin-left: 40px;">주 소</p> <p>(대리인 입찰시)</p> <p style="margin-left: 40px;">위 대리인 성 명 ① (전화번호 :)</p> <p style="margin-left: 40px;">주민등록번호</p> <p style="margin-left: 40px;">주 소</p> <p style="margin-left: 20px;">세무서장 귀하</p>			
※대리인 입찰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54g/m²)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08.4.29>

입찰 조 서									
(제 회)									
납 세 자	①성 명		②주민 등 록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주소또는거소								
서장	운영 지원 과장	⑤재산명칭 또는번호	⑥매각예 정가격	⑦입찰 가격	⑧입찰자 성 명	⑨입 찰 보증금	⑩계 약 보증금	⑪낙찰대금 납부월일	
작성자		직			성명		⑫		
1.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2.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매공고에 제기한 번호마다 별지로 할 것									

2206-01-101A

210mm×297mm

75.2.1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04.3.11 >

기 관 명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금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	월 일
<p>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전에 채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 () 원</p> <p>귀하</p>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01.3.31>

기 관 명

우 〇〇〇-〇〇〇 주소 /전화 ()〇〇〇-〇〇〇〇 /전송()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과 과 장 〇〇〇 주 사 〇〇〇 담당자 〇〇〇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거 소			
매도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거 소			
매 각 재 산 의 표 시				
납 부 할 금 액	금	원 정		
당 초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최 고 기 한		년	월	일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가 매입한 위 재산의 매수대금을 위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 원 귀하 </div>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귀하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100g/m²)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1997.4.10 >

문서번호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공매			
등기의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권리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기 의무자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과세표준		부동산 가격 금 원정			
등록세		금 원정(분의)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성명					
부속서류		매각결정통지서 통 등기청구서 통			
접수	년 제	월	일 호	접수	조사
				기입	

22226-16411일

97.2.27 승인

210mm×297mm

(백상지 100g/m²)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1992.12.31>

등 기 청 구 서		처리기간	
		1 일	
등 기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또는거소	(통 반)	
체납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 번호
	⑦주소또는거소	(통 반)	
⑧재 산 의 표 시			
⑨매 각 결 정 연 월 일		년	월 일
⑩대 금 납 부 연 월 일		년	월 일
⑪납 부 금 액		금	원정
⑫등 록 세		금	원정
<p>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 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장 귀하</p>			
<p>붙임 : 등록세 금 원정</p>			

22226-16511민
92.12.28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00.3.27 >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년	월	일
수신					발신	㉠	
참조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 재산매각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 권 수 리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 표시							
⑦압류연월일		년	월	일			
⑧공매연월일		년	월	일			
⑨매각결정일자와금액		년	월	일	매각결정금	원정	
공 한 매 매 에 수 의 인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소또는거소						
⑬국유(공유)재산매수대금지불금 잔액		금	원정	년	월	일 납입	

2206-01-107D

75.2.1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서식] <신설 2012.2.28>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기일 통지

(앞쪽)

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기일을 지정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확정된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0조의2제2항).

체 납 자	성 명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처분청		
매각재산의 표시		
매각 대금		
배분 일자		년 월 일
배분 장소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금지사항

1. 제출서류 :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 채권입증 서류 사본

2. 절차안내

- 가. 배분기일 7일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나. 배분기일에 출석하는 채권자 또는 채납자는 채권원인서류 원본(채권입증서류,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한 채권자는 배분기일까지의 확정된 채권액 또는 채납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마. 배분금은 신고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며,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합니다.
- 바. 배분 후 잔여채권이 있음을 사유로 채권원인서류를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서환부신청서를 제출(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배분대상 채권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납자는 배분기일 7일전부터 서면으로 배분이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 배분이익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금 지급을 유보하고, 이익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금을 지급합니다.
- 자. 배분기일에 채권자 또는 채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게 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의2서식] <신설 2012.2.28>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기일	
신청인의 권리 관계		
열람신청 서류	<input type="checkbox"/> 배분계산서 <input type="checkbox"/> 감정평가서 <input type="checkbox"/> 채권신고 및 배분 요구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국세징수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매재산에 대한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세무서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	------	--------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의3서식] <신설 2012.2.28>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이의제기자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장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권리관계		
상대방	배분순위	채권자	
	배분금액 원	이의제기금액 원	
공매재산	공매재산의 표시		
	처분청	체납자	배분기일

이의제기 사유 (증거자료 첨부로 제시 가능)

「국세징수법」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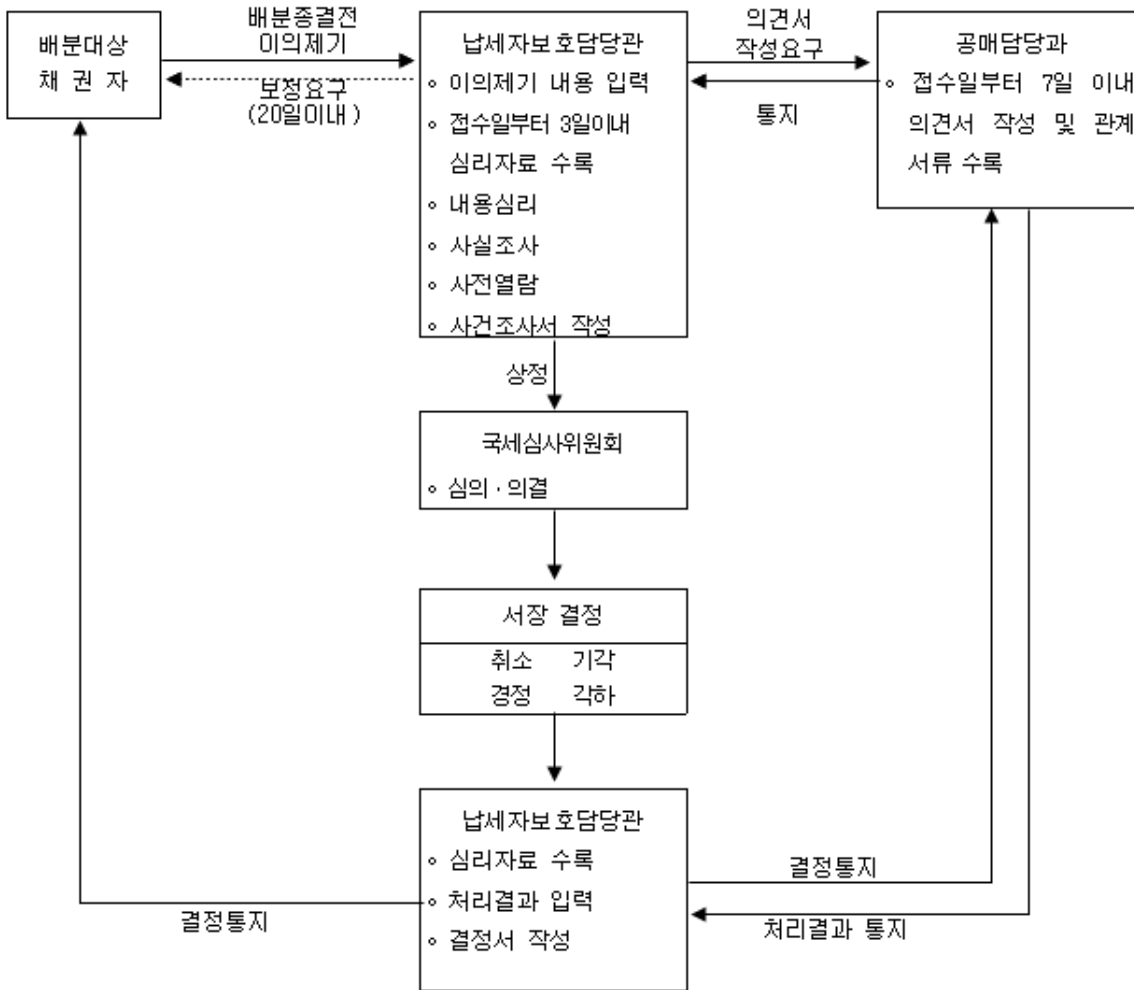
(뒤 쪽)

유의사항

1.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만,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배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제기 후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배분이익로 지급이 유보된 배분금은 당사자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국세징수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에게 이첩됩니다.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	------	--------

○○세무서장

직인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01.3.31 >

○ ○ 세 무 서

우○○○-○○○ 주소 /전화()○○○-○○○○/전송()○○○-○○○○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배분금전예탁통지서				
채권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또는거소			
채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또는거소			
배 분 금 액		금 원 정		
예 탁 장 소				
예 탁 일 자		년 월 일		
<p>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세무서장 인</p>				
<p>구비서류 : 배분계산서등본 통</p>				

210mm×297mm(백상지 100g/m²)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1997.4.10>

[별지 제64호 서식] 삭제 <2012.2.28>

[별지 제65호 서식] 삭제 <2012.2.28>

[별지 제66호 서식] 삭제 <2012.2.28>

[별지 제67호 서식] 삭제 <2012.2.28>

[별지 제68호 서식][별지 제52호의6서식]으로 이동 <2012.2.28>

[별지 제69호서식] 삭제 <1997.4.10>

[별지 제70호서식] 삭제 <1997.4.10>